

협상서

서울디자인재단(이하 '재단')과 (주)피알하우스(이하 '사업자')는 『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』 홍보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상한다.

- '사업자'는 사업의 홍보 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통해 서울이 국제적 대표 디자인 도시로 확립할 수 있도록 '재단'과 긴밀한 협의하에 세부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, 사업 추진 시, 총감독 및 '재단'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·반영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.
- 계약 체결 후, 기한 이내에 세부사업계획, 세부추진일정, 전문가 및 시민, 관계자 참여방안 및 의견 수렴 방안 등 제안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도록 한다.
-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'재단'과 '사업자'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및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계약체결 시의 계약서(과업지시서, 사업계획서)에 기준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및 수행계획, 조직, 세부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, 또한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.
- '사업자'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 계획서상 합의한 주요일정에 차질이 있거나 사업기간 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.
- 재단은 '대표사업자'와 '사업자'의 사업비 부정사용 및 과오사용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환수 조치하며, 이에 따르는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분담부문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있다.
- '사업자'는 사업비(520,000,000원)의 예산범위에서 '재단'과 협의하여 계획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과업일체를 진행하도록 한다.
 - 과업의 조정을 통해 입찰제안금액의 증액이 있었으며, 아래와 같다.

금액		비고
입찰제안금액	498,000,000원	인쇄항목 과업의 증가
협상금액	520,000,000원	

-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시, '사업자'는 정산서류를 제출하며 사업진행 모든 과정에서 지출된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.
 - 정산내역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승인한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다.
-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성과품, 제작물 일체 및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서울시와 '재단'에 귀속되며, 법적 문제시 책임은 '사업자'에게 있다.
- 사업 수행 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행정적, 법적인 업무협약이 완료되어야 한다.
- 기타 과업지시서, 사업계획서에 수록된 내용 및 '재단'이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- '재단'과 '사업자'는 업무수행과정이나 업무수행이 완료된 후 업무를 통해 입수하거나 교환한 기밀(민감)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, 협상결과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19. 4 . 22 .

(재)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 경 란 (인)

(주)피알하우스 대표 손 혜 경

